

2022. 10. 18.(화) 10:00

제30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30일

2. 제 출 자 : 김은영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연간 총회의일수를 100일에서 110일로 연장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연간 총회의일 수 변경(안 제2조)
-100일 이내 → 110일 이내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연간 총 회의일수를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2조에 연간 총회의일 수를 변경 규정함
 - 100일 이내 → 110일 이내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본문 중 “100일” 을 “110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u>100일</u>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 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 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 ----- ----- ----- <u>110일</u> - ----- ----- ----- -----

□ 지방자치법

제56조(개회 · 휴회 · 폐회와 회의일수)

- ① 지방의회의 개회 · 휴회 ·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30일

2. 제 출 자 : 각동환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교육, 훈련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5.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 제정이유

-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에 조례의 목적,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제6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제8조에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제10조에 교육, 훈련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의 제정은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대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군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및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즉시 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 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 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연락체계,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 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협의 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과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유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주민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정보전달 방법 및 절차, 관계 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요청을 받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 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 결과” 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 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 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9조(교육 · 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 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 · 지방고용노동관서 · 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량 줄이기,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 · 대비 ·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 운영자
2. 환경 · 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0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건전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재무관, 징수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재무회계 사무처리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참조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조항으로 현행화(안 제4조)
-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준용,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 준용(안 제8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준용 규정 신설(안 제9조)

5.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 「지방기금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건전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재무관, 징수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재무회계 처리사무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4조에 「지방자치법」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현행화
- 안 제8조에는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준용,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함
- 안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준용 규정을 신설함

○ 검토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법정 의무기금이자 그 목적에 따른 적립성 기금인 만큼 그 운영규정의 명확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으로 재정의 건정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재원과 용도) ① (생략) ②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하여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 4. (생략) ③ ~ ⑤ (생략)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 ----- ----- ----- -----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회계공무원) ①·② (생략)	제8조(회계공무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u><신 설></u> <u>제9조 · 제10조</u> (생 략)	<u>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u> <u>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u> <u>제10조 · 제11조</u>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	--

□ 지방회계법 제46조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지방기금법 제16조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0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내실화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우리 군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위원회 정의 및 적용대상 (안 제2조 ~ 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4조 ~ 안 제5조)
-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 (안 제7조 ~ 안 제8조)
-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안 제13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양성평등기본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위원회 운영의 필요 사항 규정으로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안 제2조~제3조에 위원회 정의 및 적용대상
- 안 제4조와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안 제7조, 제8조에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
- 안 제13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를 규정함
- 부칙 안 제3조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금지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등은 우리 군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관계 법령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설치·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군의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군의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및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를 지양하고 관련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며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또는 변경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사유(제8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

성권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② 군수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그 분야의 전문가의 수가 적은 경우를 말한다)를 위촉하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⑤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위촉직 위원 중 임명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권자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

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전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전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과 회의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중에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해당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관리하면서 같은 사람의 중복 위촉여부 등의 사항을 파악한 경우, 해당 담당부서장에게 그 위원을 재위촉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자체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지급. 이 경우 재난상황, 시급한 안전 처리의 필요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최하는 사이버 회의(화상회의 등)를 포함한다.

2. 심사수당

가. 전문적이거나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안전 처리. 이 경우 참석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재난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서면·전자우편 등에 의한 심사

3. 실비: 교통비, 급량비, 숙박비, 여비 등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관계 법령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 령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 」의 회의와 관련하여 관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회명				관리 부서 및 담당자					
설치근거						설치일			
목 적						기 능			
위 원 회 구 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총 명 : 당연 명, 위촉 명)						
			공무원	전문가등	시민단체 추천	비고 (여성)			
			(명)	(명)	(명)	(명)			
	※ 위원임기 : 년(단, 회 한하여 연임가능) 위원란에 명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수 기입 ※ 위원명단 : 별첨								
위 원 회 운영실적	연 도 별								
	개최횟수								
	예 산 집 행 (천원)	예산액							
		집행액							
정비실적	연도별	정 비 내 용							

※등록번호:부서명-번호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0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4. 주요내용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과 답례품 및 공급
업체 선정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답례품의 종류는 달성군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
산물 및 임산물과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
한 물품 및 군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등으로 할 수 있
도록 함(안 제3조)
-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시 공정을 기하기 위한 답례품 등의 선
정 시 고려사항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에 관한 사항과 답례
품 공급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기부금 기탁서 접수, 기부자 본인 여부 확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등,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을 위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재원을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정함(안 제8조)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정함(안 제9조)
- 기금 관리·운용 시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필요한 비용을 시행령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기금으로 충당하도록 정함(안 제10조)
- 고향사랑 기금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함.(안 제11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위원구성,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21조)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제23조)
-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2023.1.1.)과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규정함(부칙 안 제1조~제4조)

5.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지역재정 확충과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2조~제4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
- 안 제5조~제7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 공급비용 지급,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용목적, 기금운용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12조~제21조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임기, 해촉, 직무, 회의 등을 정함
- 안 제22조~제23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부칙 안 제1조~제4조 조례의 시행일(2023.1.1.)과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관한 특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함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근 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시행 : '23. 1. 1.
- 기부주체 : 개인 (법인 불가)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기부혜택 :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답례품 제공(기부액 30%이내)

○ 검토의견

-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덧붙이자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제혜택은 전국이 같지만 답례품은 지역마다 다르게 되는 것이고, 답례품이 기부 여부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앞서 시작한 외국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답례품 선정을 위해 연구용역까지 발주, 아이디어 공모 등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로 적립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달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의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이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군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답례품 선정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군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의 관할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기업이 군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및 군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을 포함)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수가 인증한 품목 및 군 지역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축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지역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군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관할구역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물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품목 등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의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확인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제2호 사항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

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마련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회계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달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임명 또는 위촉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등 기부금품 업무를 담당하거나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 사업 및 기금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위원으로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

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전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호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의 이행 및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선정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0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77조에 근거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무수행을 할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 등(안 제4조 ~ 제5조)
-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지원사업 사무위탁, 경비의 지급 등(안 제8조 ~ 제9조)
- 지휘·감독, 협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공무원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
- 제4조~제7조까지 지원범위, 지원제외,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 제8조~제12조까지 지원사업 사무위탁, 경비의 지급, 지휘·감독, 협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 제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 또는 편의증진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

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대상이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신청방법, 그 배정·제공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공무원에 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때 하여야 할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제공 신청내용의 평가 및 그

배정·제공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입·차입 등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8조(지원사업 사무위탁 등) ① 군수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과 능력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 전문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협약의 내용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수탁 전문기관에 그 위탁 사무 수행계획 및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수탁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탁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문서로써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약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 전문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 전문기관이 제8조제2항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제10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 수탁기관에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0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달성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수정하고, 달성군의회와의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를 정하는 한편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등 후생복지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소속공무원의 범위 수정(안 제1조~제3조)
- 후생복지사업 근거 조항 마련(안 제6조)
-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조항 추가(안 제13조)
- 달성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 규정 신설(안 제16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공무원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수정하고, 달성군의회와의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를 정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 소속공무원의 적용범위를 수정함
- 안 제6조 후생복지사업 근거 조항 마련
- 안 제13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 정함
- 안 제16조 달성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근거 규정(신설)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으로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 의회” 를 “본청”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그 밖에 휴직중인” 을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 달성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제6조제6호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 를 “퇴직예정자” 로 하고, “국외 연수” 를 “국내외 연수” 로 하며, 같은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 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제7항 중 “담당이” 를 “담당 팀장이” 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제8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복지제도의 통합운영 등) 군수는 달성군의회 의장과 상호간에 협의를 통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u>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이하 “군청 등”이라 한다)</u> 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 ~ 9. (생략)	제2조(정의) ----- -----. 1. ----- --- <u>본청</u> ----- ----- ----- ---. 2. ~ 9.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u>그 밖에 휴직중인 공무원</u> 2. (생략) <신설>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u>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u> ---- 2. (현행과 같음) 3. <u>제13조의 달성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u>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1. ~ 5. (생략) 6.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 연수 지원 <신설> 7. ~ 9. (생략) 제13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생략) ⑥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⑧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퇴직예정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7.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8. ~ 10. (현행 7. ~ 9.와 같음) 제13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 .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 --- 담당 팀장이 ---. ⑧ (현행과 같음)
---	--

<신설>	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⑨ (생략)	⑪ (현행 ⑨와 같음)
<신설>	제16조(복지제도의 통합운영 등) 군수는 달성군의회 의장과 상호간에 협의를 통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생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0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 대상 범위 규정(안 제3조)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실태조사 관련 사항 규정(안 제5조)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관련 규정(안 제6조)
-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관련 규정(안 제7조~제10조)
-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사무위탁 규정(안 제11조)

5. 관계법령

- 「소상공인 기본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
- 안 제4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 안 제5조 실태조사 관련 사항 규정
- 안 제6조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규정
- 안 제7조~제10조 특례보증지원 및 대상, 이차보전 관련 규정
- 안 제11조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사무의 위탁을 정함

○ 검토의견

- 코로나19,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생계 유지 부담금을 줄여주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종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장 주소가 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은 경역혁신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⑤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특례보증대상) ①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마련하여 운용하는 지침 등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3.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제9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이자율 중 연 3 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경우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원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5. 연체 등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이 증가한 경우
6.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군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 중 일부를 군 출자·출연기관이나 사업추진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0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달성군에서 세 번째로 운영되는 남부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 신설(안 2조제3호)

5.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2조제3호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신설)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달성군 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옥포로 13 2.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4 3. <신 설>	제2조(명칭 및 위치) (현행과 같음) 1. ~ 2. (현 행 과 같 음) 3. <u>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u>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0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금의 운용관 및 출납원을 변경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 2.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어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들의 포상근거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안제10조제3항)
-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의 명칭 변경(안 14조제3항)
- 체육진흥기금의 기금 운용관, 기금 출납원을 담당 부서장 및 담당 팀장으로 변경(안 제17조제1항제1호)
- 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관한 중복조항 삭제(안 제21조제2항)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1조제3항)
- 체육발전 유공자들에 관한 포상 조례 변경(안 제28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민체육진흥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및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 2.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됨
- 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들의 포상근거 기준을 구체화하여 포상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제10조제3항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함
- 안 14조제3항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의 명칭 변경
- 안 제17조제1항제1호 체육진흥기금의 기금 운용관, 기금 출납원을 담당 부서장 및 담당 팀장으로 변경함
- 안 제21조제2항 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관한 중복조항을 삭제
- 안 제21조제3항 상위법 개정에 따른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 안 제28조 체육발전 유공자들에 관한 포상근거의 기준을 명확화함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 “을 ”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정책관광국장” 을 “기금 담당 국장” 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을 “기금 담당 부서장”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정책관광국장” 을 “기금 담당 부서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체육진흥담당 팀장” 을 “기금 담당 팀장” 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 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체육단체 추진 사업의 필요 경비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으로써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전국체육대회 ·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 전국 소년체육대회 입상
2.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주최 · 주관 전국단위대회 입상
3. 대표 선발전을 통한 군 또는 대구광역시의 대표로 전국단위 대회 입상
4. 그 밖에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생략)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경비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u>체육단체 추진 사업의 필요 경비 및 사무실 운영 경비</u> 5. <u>체육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u> 6. ~ 14. (생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체육단체 추진 사업의 필요 경비</u> 5. <u><삭제></u> 6. ~ 14.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 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성군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	---

제28조(포상) <u>군수는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u>	제28조(포상) ①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으로써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u> 1. <u>전국체육대회·전국 장애인체육대회·전국 소년체육대회 입상</u> 2. <u>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주최·주관 전국단위대회 입상</u> 3. <u>대표 선발전을 통한 군 또는 대구광역시의 대표로 전국단위 대회 입상</u> 4. <u>그 밖에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② <u>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u>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0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안 제4조)
- 운영의 위탁 및 운영지원(안 제5조, 안 제6조)
- 수탁기관의 의무 및 지도·감독(안 제7조, 안 제8조)

5.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역보건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 안 제4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 안 제5조 ~ 제6조 운영의 위탁 및 운영지원
- 안 제7조 ~ 제8조 수탁기관의 의무 및 지도·감독

○ 검토의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7. 5. 30.)’에 근거,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본 조례도 없이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참고자료 1부.
2) 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참고자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시 행 : 2017. 5. 30.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 현황

2022년	기관별	계	직영	위탁
정신건강복지센터	소계	262	94	168
	광역	16	0	16
	기초	246	94	152

※출처: 통계청(KOSIS)

○ 대구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황

연번	구 분	조 례 제 정
1	대구시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2017. 10. 30.
2	중 구	제정 준비중
3	동 구	2018. 2. 20
4	서 구	-
5	남 구	2011. 3. 10
6	북 구	2019. 9. 20
7	수성구	2019. 4. 1.
8	달서구	2020. 5. 14.
9	달성군	제정 준비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등”이란 정신의료기관 및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6. “정신건강전문요원”이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터” 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구역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상태평가 및 사례관리
2. 사례관리를 위한 개별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조정
3.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정신질환 만성화 방지
4.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위기개입 사업
5.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유족 지원 사업
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9. 법 제5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 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10.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교육훈련 등
11.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운영 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모든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여 그를 파손·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른 위탁의 취소, 제9조에 따른 위탁협약의 해지 및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위탁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법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시설·장비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센터를 이용하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사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기 간 : 2023년 ~ 계속
- 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비용

2. 비용발생 요인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

3. 관련조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비용

나. 추계 결과 : 5년간 5,216,220천 원 정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사업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5,216,220천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기금·시비) 및 자체예산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지 붙임

6.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장 최윤서

[별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 입		1,043,244	1,043,244	1,043,244	1,043,244	1,043,244	5,216,220
의존재원		782,433	782,433	782,433	782,433	782,433	3,912,165
군 비		260,811	260,811	260,811	260,811	260,811	1,304,055
세 출		1,043,244	1,043,244	1,043,244	1,043,244	1,043,244	5,216,220
민간위탁금		1,043,244	1,043,244	1,043,244	1,043,244	1,043,244	5,216,220
재원 조달		1,043,244	1,043,244	1,043,244	1,043,244	1,043,244	5,216,220
의존 재원	소 계	782,433	782,433	782,433	782,433	782,433	3,912,165
	기 금	521,622	521,622	521,622	521,622	521,622	2,608,110
	시 비	260,811	260,811	260,811	260,811	260,811	1,304,055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군 비		260,811	260,811	260,811	260,811	260,811	1,304,055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0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을 기존 1개권역 2개소에서 3개권역 5개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영어교육 접근성 강화 및 지역교육 인프라 향상으로 맞춤형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4. 관련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조례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 위탁대상 사무 :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사무 전반
 - 사업대상 : 군민(7세, 초등학교, 장애인)

- 사업내용 : 수준별 원어민 실용영어 회화 수업 운영
- 위탁내용
 - 원어민 강사 및 한국인 보조 강사 파견
 - 교육 과정 구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반 편성, 수강 모집, 수강생 관리 등 운영 전반
 - 그 외 사업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위탁기간 : 2023. 1. ~ 12.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 추진일정
 - 2022. 10. : 2023년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추진계획 수립
 - 2022. 1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수탁기관 선정
 - 2023. 1. : 중부권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 2023. 3. : 북부권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예정)
 - 2023. 7. : 남부권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예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기존 중부권에서 연간 최대 6,660명이 수강하던 것을 연간 최대 15,300명이 수강 가능하도록 원어민 영어교실을 3개권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양성 및 지역교육 인프라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원어민 및 한국인 보조강사 수당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향후 민간위탁시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경험 이 많은 기관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회동의)

-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0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489번지 일원
- 토지이용현황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 도시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 (A = 4,427㎡)
 -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조서

■ 환경기초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달성광산 수질정화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489일원	-	증) 4,427	4,427	-	-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달성광산 수질정화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 A = 4,427㎡	· 달성광산(폐광)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5. 주민 의견청취 결과

- 열람기간 : 2022. 8. 22. ~ 9. 13. (토·공휴일 제외 14일간)
- ※ 일간지 공고 : 대구일보, 대경일보
- 제출의견 : 없음

6.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 수질오염방지시설 : 군의회 의견 청취 대상

II.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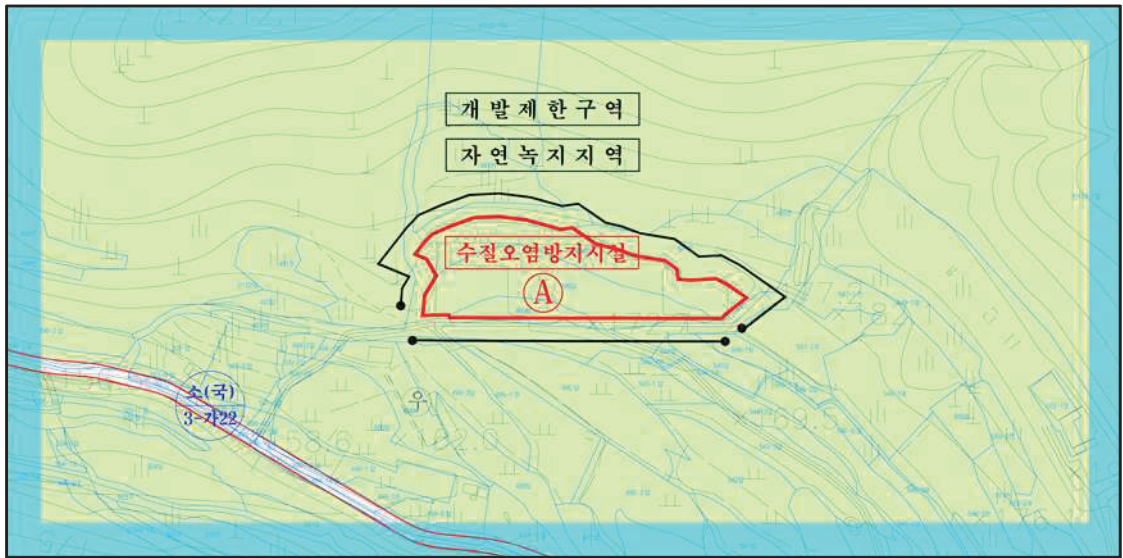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사유는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가창면 상원리 489번지 일원 4,427㎡에 대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폐광된 달성광산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기존의 자연정화공법에 서 물리·화학적공법으로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수질오염방지시 설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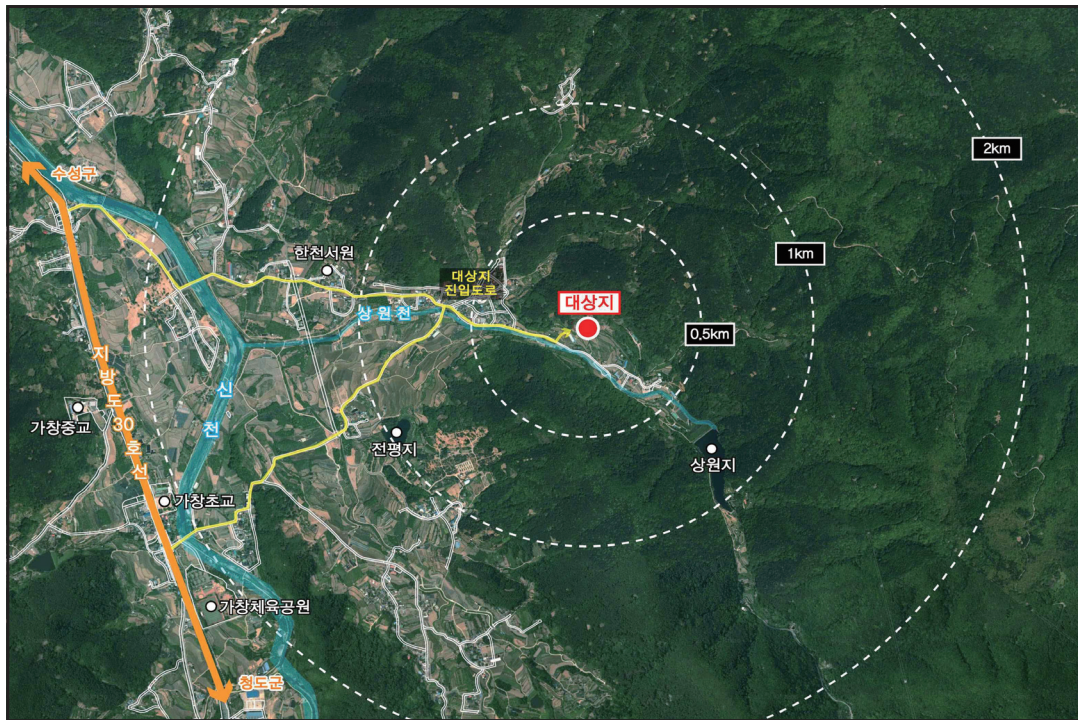
-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 본 결정안은 주변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및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사안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 1 **관련 도면 등**

○ 도시개발계획, 경관인도



○ 위치도



○ 대상지 항공사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

라. 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거. 수질오염방지시설